

『구미도시기반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3년 1월 15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3년 1월 15일

라. 상정일자

- 2003년 1월 20일 제77회 구미시의회의임사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
- 2003년 3월 21일 제78회 구미시의회의임사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
- 2003년 3월 24일 제78회 구미시의회의임사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
- 2006년 4월 20일 제113회 구미시의회의임사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해 운

나. 제안이유

3단지내 기존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인 330,000m³/일 으로는
한계점에 도달하게 되어 원평동 826-1번지 일원에 60,000m³/일
규모의 제2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하수처리에 원활을 기하고
낙동강 수질 보전 및 오염방지와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 하고자함

다. 주요내용

- 위 치 : 구미시 원평동 826-1번지 일원
- 면 적 : 34,374m²(49,454m² ⇒ 34,374 : 구미천 제방 제척)
 - 농 지 : 33,413m²(97.2%)
 - 도로·하천 및 기타 : 961m² (2.8%)
- 소유자별 현황
 - 사유지 33,471m²(97.4%), 국공유지 903m²(2.6%)
- 시설 용량 : 금회 60,000m³/일, 최종68,000m³/일
- 시행 기간 : 2002 ~ 2006

라. 참고사항

- 추진경과 사항
 - 2002. 01. 09 : 도시계획 입안
 - 2002. 02. 21 : 주민의견청취 및 공람공고
 - 2002. 04. 06 : 의회 의견회신(원안대로 추진)
 - 2002. 07. 12 : 도시계획위원회 자문(원안 자문)
 - 2002. 08. 30 : 경상북도 상정 의뢰
 - 2002. 09. 10 : 경상북도 재검토 지시
- ※ 진입도로 부분의 하천(제방)과 하수도의 중복결정에 대하여 재검토 지시에 따라 진입도로는 기존제방으로 이용하고 하수종말처리장만 도시계획결정 조정하여 신청 검토 지시
 - 2002. 11. 04 : 도시계획 재입안 재요청
 - 2002. 11. 27 : 주민의견청취 공람 공고
 - 2003. 02. 21 : 도시계획위원회 원안 자문
 - 2003. 01. 20, 3. 21, 3. 24 의회 의견청취결과 보류중(3회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황 창 수

- 국가 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원평동 826-1번지 일원에 제2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하수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낙동강 수질 보전 및 오염 방지와 도시 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제77회, 78회 구미시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 질의 토론하였으나, 사업의 타당성 및 적법성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인식되어 심사 보류됨에 따라 『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』가 구성이 되어 그 동안 조사특위에서 검토되었던 사항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찬성 의견 채택

붙 임 : 의견서 1부

『구미도시기반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
의 건 서

- 국가 공단 내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원평동 826-1번지 일원에 제2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여 하수 처리에 원활을 기하고 낙동강 수질 보전 및 오염 방지와 도시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제77회, 78회 구미시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3회에 걸쳐 질의 토론하였으나, 사업의 타당성 및 적법성 등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성이 인식되어 심사 보류됨에 따라 『구미하수종말처리장 및 구미도시계획재정비 조사특별위원회』가 구성이 되어 그 동안 조사특위에 서 다루었던 사항으로서 찬성의견을 제시함